

## 2023년도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기업 모집 공고

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·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·평가하는 「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」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8일  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### 사회적가치지표 (SVI: Social Value Index) 란

- ‘사회적 가치’란,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, ‘사회적 가치 실현’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“공익(Public interest)의 실현”을 의미
- 사회적가치지표(SVI)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 하는 것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·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

\* '10~'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·개발, '17.7월 공표

- 공공·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악 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
-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,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

※ 상세내용은 「2023 사회적가치지표(SVI) 활용 매뉴얼」참고

# 1 사업개요

## □ 사업목적

- 사회적가치지표(SVI)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
-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·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

## □ 참여대상

-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품(물품·서비스)의 생산·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1,500개소

\*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 등

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모집 공고	신청 접수	SVI 측정	결과 안내	홍보 및 확산
2.28.~	3.20.~9월	4~10월	5~10월	5~11월

\* 단계별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, 측정 세부 내용은 공고문 붙임의 「2023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매뉴얼」 참조

### 【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】

- (측정규모) 연 250개 내외 → 연 1,500개 내외
- (신청기간) 1개월 → 7개월
- (결과안내) 11~12월 일괄 안내 →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기업별 안내
- (참여대상) (예비)사회적기업 중심 →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
- (측정기관) 사회적가치 측정 전담부서로 '사회적가치측정센터' 신설

## 2 세부절차

### ①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사업 공고

- 2023년도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

###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

- 공고문 [붙임2]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

\* 3.20.(월)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을 통해 제출

### ③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

- (1차) 서면(신청서·증빙서류) 확인 중심 측정, 필요시 문의·보완\*

\* 필요시 유선, 온라인 화상 등으로 보완 자료 요청·검토

- (2차) 1차 측정 검토서 확인 및 인터뷰\*를 통한 최종 측정 후 등급\*\* 확정

\* 인터뷰 방법은 유선, 온라인 화상,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

\*\* 탁월, 우수, 보통, 미흡 4가지 등급으로 산출

### ④ 결과 안내

-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소요

\* 서류 추가 확인 및 인터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결과 도출 이후, 통합정보시스템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을 통해 상시 조회 가능

### ⑤ 탁월·우수 기업 홍보 및 사업연계

- (홍보) 전국 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 '탁월'·'우수' 등급 기업 홍보\*

\* 진흥원 누리집([socialenterprise.or.kr](http://socialenterprise.or.kr))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

- (표창) 측정결과 '탁월' 등급 기업 중 최우수 기업 대상 표창 수여

- (사업연계) 다양한 공공·민간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·연계

☞ [예시] 'SVI 참여기업'을 사업 신청자격으로 제한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-55호

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 
고용노동부 추천기업(사회적기업) 모집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중소벤처기업부)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6일

고용노동부장관

- 신청자격: 공고일(23.1.26) 현재 업력(業力) 4~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)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'20년~'22년 중 사회적가치평가(SVI)에 참여한 기업

### 3 신청방법

#### □ 신청기간

○ 2023.3.20.(월) 09:00 ~ 2023.9.27.(수) 18:00

\* 신청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(마감 시 종료공고 예정)

- 신청기간 전·후에 등록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간 유의

#### □ 제출방법

○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을 통해 제출

\* 시스템 이용·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[참고]를 확인

- 시스템 오류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오류화면 증빙자료(캡처화면 등)와 함께 이메일([svi@ikosea.or.kr](mailto:svi@ikosea.or.kr))로 제출

\* 메일접수 및 신청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(SEIS)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최종 접수된 것으로 인정

○ 신청서 작성 전 「SVI 측정」 온라인 학습 권고

\* 온라인 학습포털(<https://coopedu.step.or.kr>) → '원격훈련과정' 클릭 → '[직무전문] 사회적 가치 측정 교육(측정 기업용)' 클릭

## □ 제출서류

- (신청서) [붙임 2]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
- (증빙서류) 기업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양식으로 제출, 필요시 [붙임 3]의 증빙자료 예시 참조
- ※ [유의사항]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,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.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
- ※ 기업이 제출한 자료(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)는 반환되지 않음

## 4 혜택사항

### □ 공공·민간기관 대상 홍보

-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(공문 발송 등)
  - 공공구매 및 지원사업 선정 시 탁월·우수기업 추천
- 진흥원 공식 블로그, 매거진 등을 통한 홍보 지원
-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·우수기업 우선 추천

### □ 기관 표창수여

-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결과 최우수 기업 대상 '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장' 표창 수여
  - \* SVI 측정결과 '탁월' 등급 기업 중 진흥원 '포상 업무처리지침'에 따라 최종 선정

### □ 사업연계 추진

- 공공·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(등급별 가점부여 등) 추진

-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\* 심사 대비 참여기업의 사회적 성과 달성 수준 제고를 위한 기업별 피드백(측정결과보고서 등) 제공

\*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및 사업개발비 심사에 SVI 지표 일부 활용

## 5 문의처

### □ 사회적가치지표(SVI) 작성 문의

- 이메일: svi@ikosea.or.kr
- 전 화: 사회적가치측정센터(031-697-7791, 7792, 7793, 7794, 7795)

### □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관련 문의

- 시스템 접수 오류 문의: SEIS 시스템 고객센터(1661-4006)

## 6 기타사항

### □ 사회적가치지표(SVI) 교육

- (온라인 교육) 신청서 작성 전 「SVI 측정」 온라인 학습 권고
  - \* 온라인 학습포털(<https://coopedu.step.or.kr>) → '원격훈련과정' 클릭 → '[직무전문] 사회적 가치 측정 교육(측정 기업용)' 클릭
- (오프라인 교육) 5월 중 별도 공지 예정
  - \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([www.socialenterprise.or.kr](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)) > 소식·자료 > 공지사항

### □ 변경사항

- 상기 공고사항은 사업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할 경우에는, 「변경공고」를 통해 안내\* 예정
  - \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([www.socialenterprise.or.kr](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)) > 소식·자료 > 공지사항

##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

- ☑ 진흥원은 사회적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-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,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,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.
  - 탁월·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(「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」 등)으로 안내하는 등, 다양한 사업에 추천·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☑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☑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,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-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.
- ☑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,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.
- ☑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,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,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.

### 참고

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에서 언제든지 「SVI 참여 확인서」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참고

# 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가치측정 신청 방법


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

### 1.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

### 2.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클릭

☎ 대표전화 | 1661-4006

마이페이지

육성사업

인증신청

지정신청

**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**

재정지원사업신청

사업보고서/경영공시

전문컨설팅

e-러닝

이용안내

알림마당

성장지원센터

**맞춤형 서비스** 주제별 서비스를 찾기 쉽게 묶음으로 안내합니다.

육성사업	인증신청	지정신청	재정지원	E-러닝
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		사업참가 신청		
사업참가 신청확인		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		

**지정공모**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한 지정 신청 공고

	에비(부처형)	에비(지역형)	공모마감
2023-04-07		2023-03-28	2023-03-20
고용노동부 2023년 01차 지정공		전라남도 2023년 01차 지정공도	강원도 2023년 0
공모시작일: 2023-04-10 공모종료일: 2023-05-01 소관부처: 고용노동부		공모시작일: 2023-04-03 공모종료일: 2023-04-18 지역: 전라남도	공모시작일: 2023-0 공모종료일: 2023-0 지역: 강원도



### 3. 신청서 작성

- 작성서식을 참고하여, 빨간색 네모칸 작성

#### 사회적가치측정 신청

사회적가치측정 신청서					신청서 작성서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업명					대표자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직유형 ①	<input type="radio"/> 인종 사회적기업 <input type="radio"/> 예비 사회적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립일 ②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	사업자 등록번호	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업종 ③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증(지정)번호 ④	<input type="text"/>		인증(지정)유형 ④	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메일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화번호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소 ⑤	<input type="text"/> 우편번호 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업연혁 (수상내역 등)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height: 40px;">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 사업내용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">기업의 주요사업내용 사업영역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출 및 영업이익 (단위 : 천원)	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매출액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영업이익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용현황 (단위 : 명)	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근로자수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취약계층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text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					<b>신청서 작성서식</b>  <b>▶ 공통사항</b> •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(2021년 기준)시점에서 전년도(2020년)를 의미 •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  <b>▶ 신청서 작성요령</b> ① 조직유형 : ㉠ 인종 사회적기업 ㉡ 예비 사회적기업 중 택 1 ② 설립일 : 기업의 설립·연월일 까지 기재 (예시 : 2019-1-1) ③ 주업종 : 제시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(차계정)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특수업종을 경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 (매출액 40% 이상)을 기재  <b>업종 분류</b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>1</td><td>농업·임업 및 어업 (A)</td></tr> <tr><td>2</td><td>광업 (B)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제조업 (C)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전기·가스·열기 및 수도사업 (D)</td></tr> <tr><td>5</td><td>허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(E)</td></tr> <tr><td>6</td><td>건설업 (F)</td></tr> <tr><td>7</td><td>도매 및 소매업 (G)</td></tr> <tr><td>8</td><td>음수업 (H)</td></tr> <tr><td>9</td><td>숙박 및 음식점업 (I)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(J)</td></tr> <tr><td>11</td><td>금융 및 보험업 (K)</td></tr> <tr><td>12</td><td>부동산업 및 임대업 (L)</td></tr> <tr><td>13</td><td>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M)</td></tr> <tr><td>14</td><td>사업시설행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(N)</td></tr> <tr><td>15</td><td>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(O)</td></tr> <tr><td>16</td><td>교육 서비스업 (P)</td></tr> <tr><td>17</td><td>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(Q)</td></tr> <tr><td>18</td><td>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(R)</td></tr> <tr><td>19</td><td>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(S)</td></tr> <tr><td>20</td><td>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(T)</td></tr> <tr><td>21</td><td>국제 및 외국기관 (U)</td></tr> </table> ④ 인증(지정)번호 및 인증(지정)유형 : (예비) 사회적기업만 기재 ⑤ 주소 : 도로명 주소 기재					1	농업·임업 및 어업 (A)	2	광업 (B)	3	제조업 (C)	4	전기·가스·열기 및 수도사업 (D)	5	허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(E)	6	건설업 (F)	7	도매 및 소매업 (G)	8	음수업 (H)	9	숙박 및 음식점업 (I)	10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(J)	11	금융 및 보험업 (K)	12	부동산업 및 임대업 (L)	13	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M)	14	사업시설행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(N)	15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(O)	16	교육 서비스업 (P)	17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(Q)	18	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(R)	19	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(S)	20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(T)	21	국제 및 외국기관 (U)
1	농업·임업 및 어업 (A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광업 (B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제조업 (C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전기·가스·열기 및 수도사업 (D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허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(E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건설업 (F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도매 및 소매업 (G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음수업 (H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숙박 및 음식점업 (I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(J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금융 및 보험업 (K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	부동산업 및 임대업 (L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	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M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	사업시설행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(N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(O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6	교육 서비스업 (P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7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(Q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8	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(R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9	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(S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(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	국제 및 외국기관 (U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3. 신청서 작성(계속)

-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

★증빙자료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삭제(마스킹 처리)하여 등록

구비서류 첨부하기

구비서류

파일찾기
파일삭제

No	파일명	파일크기
1	[기업명] SVI 측정신청서.hwp	14 KB
2	[기업명] SVI증빙자료.zip	487 KB

※ 각 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는 폴더별로 저장

SVI 신청서 등록



- 1.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
- 2.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
- 3.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
- 4.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
- 5.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
- 6. 사회적 환원 노력도
- 7.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
- 8. 근로자 임금수준
- 9.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
- 10. 고용성과
- 11. 매출성과
- 12. 영업성과
- 13. 노동생산성
- 14. 현시노련도

※ 임금대장은 엑셀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‘일 근로시간’, ‘월 근로일수, 취약계층 여부’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. 신청내역 확인

- (SVI 신청서 수정) 신청내역 조회 및 신청내역 수정 기능
- (SVI 신청서 제출) 최종 제출시, 반드시 ‘제출’ 버튼 클릭

사회적가치측정 신청

☞ > 민생신청 > 사회적가치측정 > 사회적가치측정 신청

신청 신청내역조회

⋮

구비서류

파일찾기
파일삭제

● 첨부가능한 용량은 최대 20MB입니다.

NO	파일명	파일크기

★최종 제출 클릭

SVI 신청서 수정
SVI 신청서 제출